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0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5. 황정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1)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12)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격화되고 있음.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5일로 확대하고자 함.

이와 함께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휴가기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럴 때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7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 음(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회부)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기타 사항

없 음